

수원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5610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4. 5. 접수 제31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보증한도를 65,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회사 및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및 이자 합계 13,323,793원과 그중 원금 6,213,29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113)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발령되어 2016. 11. 29. 확정되었다.

다. C의父 E가 사망하여 E의 배우자인 자녀인 피고 외 2명이 E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C를 포함한 E의 상속인들은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자력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6. 11. 16. 당시 C가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131,000,000원(2016. 1. 1.자 공시가격 기준)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가액 약 29,111,111원)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약 1,3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약 43,706,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약 55,617,000원,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채무 약 43,935,000원, F은행에 대한 채무 약 24,797,000원, F카드에 대한 채무 약 9,642,000원 합계 약 190,697,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4. 5. 접수 제31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제8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아파트

1층 1149.12㎡

2층 내지 9층 각 880.89㎡

10층 621.69㎡

지층 763.6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대 315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5.33㎡

관할동기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동기소 관.

